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 수립,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4)
-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5 신설).
-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51조).

II. 검토의견

1. 기상청장의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명확화(안 12조의3)

개정안 제12조의3의 조제목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로, 정의규정 신설을 통해 이 법률에 새롭게 도입된 기상기후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

며, 그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여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u><신 설></u>	<u>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제공, 보존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u>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u>	<u>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u> <u>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u>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u>

	<u>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u>④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u>	<u>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u>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u>
--	---	--

2. 구법인의 해산 규정 정비(안 부칙 제2조제2항)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 현행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현행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그 해산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¹⁾에 따른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임. 따라서 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민법」 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도 적용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되지 않도록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상청과 협의하여 수정 의견을 마련함.

개정안 부칙	수정의견
제2조(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 ⑦ (생략)	제2조(재단법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에 따라 설립되는 개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 ⑦ (개정안과 같음)

그 외에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은 정)